

 금융위원회	보도 설명			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 FIU 기획협력팀장 오 화 세(02-2100-1730)	담 당 자	고 선 영 사무관 (02-2100-1741)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**제 목 : 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규정은 권한
부여가 아닌 의무부과 규정입니다.
[파이낸셜뉴스 9.14.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**

1. 기사내용

- 파이낸셜뉴스는 9.14일 「가상자산 기업들도 ‘회원 주민번호 수집’ 권한 생긴다」 제목의 기사에서
 - ① “내년 3월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정부 신고 절차를 통과한 가상자산 기업들이 회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.”
 - ② “FIU “금융사업자 지위 인정”” 및 “한편 업계에서는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기업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된 이후...” 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,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.
- 이에 따라,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고객확인(Know Your Customer, KYC) 등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, 현행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의해 고객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
○ **고객확인 의무**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특정 금융거래법상 기본적인 의무 사항이며,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거나 수집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등의 권한·권리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□ 또한,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일 뿐,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금융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특정금융정보법은 카지노사업자 등 비금융회사에 대하여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
---	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